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843

제출년월일 : 1999. 11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 안 이 유

○ 선부동 978번지에 위치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는 '86.12.24일 13평형 2개동 100세대 규모로 건립되어, 현재 195개업체 485명의 근로청소년이 거주하고 있으나

○ 임대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아파트 시설관리비에도 절대 부족하므로 관련규정 범위안에서 상향 조정하고자 함

2. 주 요 골 자

가. 1인당 보증금을 10,400원에서 10,900원으로, 월임대료를 5,200원에서 5,450원으로 평균 5% 인상하고자 함(안 별표)

3. 참 고 사 항

○ 관 련 법 규 :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

○ 예 산 조 치 : 해당없음

○ 물가대책위원회 심의

· 심 의 일 : '99. 10. 14

· 심의결과 : 원안가결

○ 입법예고

· 의 견 : 없음

· 공고기간 : '99.11.18~'99.11.27(10일간)

○ 기타참고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등에관한개정조례

별표 임대아파트임대료기준표중 보증금 금액 "10,400원"을 "10,900원"으로, 임대료 금액 "5,200원"을 "5,450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별표> 임대아파트임대료기준표(조례 제6조와 관련)	<별표> 임대아파트임대료기준표(조례 제6조와 관련)

구 분	금 액	기 준
보 증 금	10,400원	1인당 부담액
임 대 료	5,200원	1인당 월부담액
기타공공요금 (공동 사용 기타 공공 요금 등)		호별 입주자 균등징수 (총사용량에 대한 입주자별 균등징수)

구 분	금 액	기 준
보 증 금	10,900원	1 인당 부담액
임 대 료	5,450원	1 인당 월부담액
기타공공요금 (공동 사용 기타 공공 요금 등)		호별 입주자 균등징수 (총사용량에 대한 입주자별 균등징수)